

## 주요 정책토론

본고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1999년 7월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통합의료보험료 부과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임.

# 통합의료보험료 부과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일 시 : 1999. 7. 8. (목) 14:00~17:00

장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좌 장 : 정경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주 제 : 통합의료보험료 부과방안

발 표 : 노인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토 론 : 김병익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병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실무전담반 개발 1팀장

김연명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금성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위원

박경숙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안종주 한겨레신문 심의위원

양봉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경실련)

오근식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센터 소장

정길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선임연구위원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안

- 2000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에 부과하고 있음.
- 소득기준 부과방안으로서 과세소득기준, 추정소득기준, 신고소득기준 등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하였음.
- 세 가지 대안별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과세소득기준: 지역가입자 중 연간 500만원 이상 과세소득자는 7.5%에 불과하므로, 단기간내에 과세소득자료에 의한 부과기준을 마련할 수 없음. 또한 자영업자의 유형별로 소득포착률이 다르고, 거래의 양성화 정도가 업종별로 차이가 많아 한계가 있음.
  - 추정소득기준: 과세자료의 제약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업종별로 추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개별 세대별로 적용함에 있어서 한계를 보였음.

- 신고소득기준: 신고소득에 재산, 자동차, 경제활동인구 등을 조정계수로 보정하여 실제소득에 근접하도록 조정
  - 모의적용 결과 월평균 소득은 136만원으로 추정됨.
  - 전체 세대의 36.7%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52%는 1만원 미만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 결과, 신고소득기준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음. 이와 함께 신고소득의 성실성 여부를 판별하는 기법을 개발함.
  - 성실신고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재 『자영자소득과약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제도, 거래관행, 세무행정 등의 개선방안을 심의하고 있음.
  - 소득과약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기까지 당분간 소득과 재산에 부과하는 현행 보험료부과체계 유지를 검토함.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과방안

- 임금근로자의 보험료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의 범위를 갑종근로소득세 자료상의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으로 일원화하고, 보험료율도 일원화함으로써 동일소득 근로자는 동일보험료를 부담하는 부담의 공정성 원칙을 확립함.
  - 현재 직장조합의 부과기준은 기본급과 일부 수당을 합산한 보수로 산정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과기준 보수의 범위가 상이하고 보험료율도 달라 직장조합간에 혹은 근로자간에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에 문제를 안고 있음.
- 부과기준보수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직장조합의 평균보험료율은 3.29%에서 2.77%로 인하되고, 공무원·교직원은 현재 5.6%에서 2.77%로 인하됨.
  - 월보험료 금액기준으로 통합 이후 직장근로자는 평균 4만 2천원이 되고, 공무원·교직원은 평균 5만 4천원이 됨.
    - ※ 현재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 3만 7천원, 공교 7만 4천원
- 보수 중 상여금과 성과수당의 비중이 큰 사업장 중심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함(예: 금융기관, 대기업, 언론사).

- 반대로 보수 중 상여금 비중이 낮은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보험료가 인하됨(예: 9인 이하 사업장은 21% 인하, 10~29인 사업장은 18% 인하, 30~99인 사업장은 12% 인하).
- 기존의 직장가입자와 공무원·교직원간에 보험료 부담의 인상·인하폭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면 공교와 직장 재정을 분리 운영할 것을 검토함.
  - 분리 운영할 경우 직장가입자는 3.29%에서 2.43%로, 공교는 5.6%에서 3.8%로 인하됨.